

日本石油産業의 현황과 國際化 対策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I. 石油審議會 石油部會 · 小委員會 의 움직임

그 년 3월 30일 석유심의회 석유부회는 ① 元壳
口 集約化의 팔로우업을 도모해 정제부문을 포함한 석유공급시스템 전체의 가일충의合理化, 效率화를 실현해 가는 일과 ② 소비자경제방식의 國際化的 방향에 있어서 모든 부문의 콘센서스의 형성을 강구하는 일 등의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昭和60年代(1985~1994년)의 석유산업정책방향」에 관하여 깊게 검토를 진행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通產省 자원에너지청은 同석유부회의 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새로운 擴大小委員會를 조직하여 4월 27일부터 검토를 개시하였다.

확대소위원회의 검토내용은 석유산업의 체제정비, 소비자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산업의 체제정비의 경우 중장기적인 수요기조, 元壳집약화의 진전상황, 元壳집약화의 가일충의 고도화 필요성의 有無, 정제단계의 집약화 필요성의 有無(歐美諸國의 경제집약화 상황, 日本의 경제집약화 경위, 日本 정유공장의 배치상황, 각 정유공장의 현황), 경제집약화의 방향, 元壳집약화의 고도화와 경제집약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정책조치 등이다. 또한 소비자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로는 석유제품무역의 현황과 전망·제외국의 수입정책·수출국의 수출정책, 소비자경제방식의 意義, 제품수입의 공급안정성, 수요구성의 相違와 제품가격체계, 수입교란방지와 수입질서, 국내경제와 제품수입의 탄력적인 선택

·組合, 비축부담의 형평성, 수출의 탄력화, 석유안정 공급과 시장원리, 이를 모두에 관련시켜 구축해야 할 정책적 방침 결정 등이다. 其他로는 등유재고 삭감의 시비, 외환리스크대책, 원유거래의円결제화 등이 검토 과제로 되어 있다.

同 확대소위원회는 4월 17일 처음 會合이래 월 2~3회 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에 대한 청문도 거듭 실시,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中間報告(최종보고는 1986년 3월)를 마칠 예정이었다. 이미 元壳집약화의 고도화, 경제의 집약화(특히 정유공장 폐쇄도 포함한 파이얼설비의 처리, 하루 50万~100万 배럴) 등에 관한 콘센서스를 얻고, 또한 점진적 국제화는 전면적으로까지는 가지는 않겠으나, 제품수입의 점진적 확대가 확인되어 同小委의 검토는 착착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下에서 7월 초순 파리에서 IEA理事會가 개최되어 同 9일 이사회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자원에너지청은 석유의 공급안정 보장과 시장기능의 확보, 점진적 국제화를 주장하는 日本의 입장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歐美의對日 석유정책비판이 회피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歐美的 日本에 대한 제품수입에의 압력을 여전히 강하다고 하여 점진적 국제화에 관계되는 검토의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同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소비자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를 중심으로 中間報告를 할 예정이다.

II. 石油產業의 対応

각 석유회사는 현재 석유심의회 석유부회·소위원회가

이달말까지 끝낼 中間報告에 주목하고 있다.

각 석유회사는 지금까지 「강인하게 신뢰되는 석유산업의 형성」을 목표로 하여 과잉설비의 처리, 2차설비의 고도화, 元壳의 집약화를 세개의 기둥으로 하는 구조개선문제에 적극적으로 착수해서 1984년도 말까지 대체로 제1의 장애를 넘었다. 요컨대 과잉설비처리에 관하여 목표인 하루 100만 배럴에 대하여 同 약 90만 배럴을 1983년 9월 말까지 끝내고, 2차설비의 고도화는 금년 3월 말의 石審·특정설비의 허가에서 FCC 환산 하루 61,900배럴을 얻고 바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元壳의 집약화에 관하여 작년 말까지 日本石油와 三菱石油, 大協石油와 丸善石油, 엣소石油와 제너럴石油, 모빌石油와 키그나스石油가 각각 광범위한 업무제휴에 관계되는 약정서에 조인, 셀石油와 昭和石油는 대등합병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昭和쉘石油로서 다시 출발했다. 더구나 大協石油와 丸善石油, 계다가 兩社의 경제회사인 코스모石油는 금년 8월 1일, 1986년 4월 1일부로 대등합병한다고 발표하였다. 합병의 개요는 ① 합병형태 및 합병비율=합병형태는 3社 합병으로 하여 大協石油와 丸善石油의 합병비율은 1對1로 한다. ② 합병기일=1986년 4월 1일 ③ 新회사이름=코스모石油株式會社 ④ 트레이드마크=코스모마크 ⑤ 본사소재지=東京郡 港區芝浦 1-1-1 ⑥ 사업범위=현재 3社가 하고 있는 기존사업 ⑦ 합병준비 위원회=합병에 관한 細目에 관해서는 즉시 합병준비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각 석유회사의 구조개선은 제1 단계를 대부분 끝내고 제2 단계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현재 제2 차의 구조개선문제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단계이다.

주요 테마는 元壳집약화의 고도화와 정유공장폐쇄도 포함된 경제의 집약화, 계다가 점진적 국제화에의 대응 등이다. 元壳집약화의 고도화는 목전의 市況 시정책이 제일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으니만큼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大協石油, 丸善石油, 코스모石油가 대등합병을 발표,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니만큼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元壳집약화의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의 集約化는 각 석유회사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착수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가격의 시정에 있어서는 수급을 극도로 좌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석유비축량, 과잉설

비 등 때문에 市況은 시정될 수 없다고 판단,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과잉설비의 처리를 정유공장폐쇄와 함께 실시할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소비자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에 관하여 업계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 있다. 그 대표는 업계최대의 석유회사인 日本石油가 이끌고 있는 「제품수입절대반대」파와 민족계 최대의 석유회사인 出光興產의 「完全自由化」파이다. 어느 쪽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이외에 이전의 IEA 각료이사회 개최를 전후 하여 조건부의 제품수입확대를 주장하는 기업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석유산업으로서는 체제정비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과제로서 콘센서스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점진적 국제화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어 이달말 까지 석유심의회 석유부회의 소위원회로부터 나올 예정인 中間報告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III. 通產省 자원에너지厅의 対応

석유심의회 석유부회·소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받고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가능한 한 1986년도 예산에 검토내용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그 중에서 가장 진전되고 있는 것이 과잉설비처리에 관련된 경제단계의 집약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유공장의 폐쇄도 포함한 대담한 處理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행정당국의 역할의 골자를 결정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처리규모의 가이드·포스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설비처리를 진행시킬 인센티브策으로서의 고용, 지역대책, 토지이용 등의 확보, 설비처리에서 발생하는 除去損에의 처리용자, 채무보증, 퇴직금에의 금융대부, 정유공장폐쇄에 따른 마스터플랜 작성 등이 올라 있다. 또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석유회사의 自主性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안인 소비자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에 관해서는 복하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① 채산성유종은 휘발유만이 되도록 되어 있어 가령 휘발유를 수입하게 된다면 다른 유종에의 코스트·푸쉬는 피할 수 없고 더구나 석유산업의 기반을 근거로 부터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 ② 석유산업은 취약한 경영기반이 지금까지도 계속돼 오고 있어 우선 무엇보다 체제정비가 요망된다. ③ 계다가 점진적 국제화로 나아가야 한다. ④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가 「제품수

입이 완전자유화된 경우 관세 등의 수입억제책으로는 값싼 해외제품의 유입을 막아낼 수는 없어 日本 정유 업체는 매우 큰 타격을 받는 한편 OPEC제국의 하류 부문진출이 앞으로도 더욱 계속되면 석유수입국의 긴급 시대책은 유연성을 끓고 더욱 안전보장의 면에서의 취약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⑤ 석유업계의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⑥ 日本 은 歐美에 비해 LPG를 늘린다면 제품수입에서는 충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등의 사항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품수입에서 日本에 대해 美国은 「전면적인 完全自由化」를, 또한 EC는 油種을 한정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응분의 부담」을 각각 요청하고 있는 경위가 있다. 더구나 신속한 실시를 강조, 日本의 나오는 태도를 엿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이제까지의 생각인 「조건정비(체제정비)」를 도모하면서 점진적 국제화로 나아간다」고 하는 태도가 그대로 歐美에 인정될 것인가 의문이다. 그 와 같은 사정을 배려, 자원에너지厅에서는 石審·小委의 중간보고는 소비지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 문제가 중심이 된다.

또한 정제단계의 집약화에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조치(1986년도 예산의 개략적인 요구는 지난달말로 마감하였다)는 강구되고 있기는 하나 중간 보고에 어떤 것만이 포함될 것인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V. 構造改善과 緊急避難策

증장기 전망을 근거로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체제정비, 게다가 소비지경제방식의 점진적 국제화는 극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석유업계는 특히 그 이전의 문제에 직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있다. 과당판매경쟁에 의한 경영내용의 극도의 악화로 이대로는 석유의 안정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산에 빠지는 기업도 출현하지 않을까 보여질 정도로 나쁜 환경이다. 체제정비, 점진적 국제화의 시기는 아니다.

종래 제품시황의 시정으로는 수급조정이 커다란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고 전에 없던 정도의 대폭적인 自主減產을 장기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황은 악화하기만 하고 있다. 수급의 神話는 붕괴되었다. 다행히 이번

은 円貨고가치, 값싼 원유가격 상황하에서 현시점에서 도산하는 등의 문제는 표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이대로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산에 빠지는 기업이 나올 것은 확실하다.

사태를 심각히 본 生田豊朗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理事長·所長(석유심의회 석유부회·소위원회 멤버)은 7월말, 小委멤버 및 통산성 자원에너지厅의 찬동을 얻어 제품시황의 불황이 이 이상 계속된다면 석유산업은 붕괴의 위기에 선다고 강조, 「판매경쟁의 3년간 휴전」을 골자로 한 긴급대책안을 제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現況의 分析과 判断

현재 日本의 석유산업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 4~6월 기간의 경상수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의 석유회사가 대폭적인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어 석유산업의 체질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에너지정책추진의 중요기둥인 석유산업은 붕괴의 위기에 빠질 것이 염려된다. 석유산업이 심각한 불황에 직면한 것은 반드시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러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것들과 비교하더라도 이번의 不況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① 예를 들면 1981년 당시의 불황은 제2차석유위기후의 원유가격 상승에다가 円貨가치하락이 진행되어 대폭적인 코스트 상승을 초래한 것이 주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유가격은 하락경향에 있고 円貨가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元壳에서 말단의 주유소 판매에까지 걸쳐있는 판매시스템 전체가 별스런 과당경쟁으로 돌입한 것이 원인이다. 말하자면 석유산업의 내부붕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② 그 때문에 종래는 업계 전체가 불황요인과 싸우는 자세를 보였던데 대해 이번에는 의기소침하여 출구가 없는 미로라고 알고서 그저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보인다. ③ 석유산업의 구조개선은 이미 石審·小委의 報告가 마무리되어 그 방침에 따라 元壳의 집약화, 정제설비의 처리 등이 실시돼 구조개선은 차차 실마리가 풀리는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을 확 무너뜨릴 것 같은 혼란이 움트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등 때문이다.

2. 提案의 概要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한은, 유익한 방책은 진급피난으로서의 판매휴전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私見으로는 휴전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사이에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① 元壳 집약화의 가일충의 전전과 강화를 도모하고 ② 정제부문에 대하여도 집약화를 추진하는 외에 ③ 소비지정제방식의 국제화에 대하여도 석유산업의 활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한정조건부로 실시하는데 그치도록 해야 한다. 휴전기간 중에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충분히 달성한 뒤에 더욱 점진적으로 自由化, 國際化的 길을 걸을 것이 필요하다.

3. 休戰方法에 관한 私見

휴전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로 휘발유가격을 체산성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이미 통산성이 通達한 「公正경쟁률」을 철저히 시행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同률의 철저시행이 반드시 충분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 그 철저한 시행을 위해서는

석유업법 및 휘발유판매업법의 활용과 행정지도의 강화 등에 의해 가일충 추진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그것들을 전제로 구체적인 안으로는 ① 휘발유판매업법에 의해 휘발유판매업자가 휘발유구입선을 제출하는 경우 元壳會社名을 명기하기로 하며 구입선인 元壳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산성이 그 이유를 상세히 청취하여 그것이 단지 판매화장만을 이유로 한 때에는 주유소新設에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 ② 사후조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공표하여 中止를 권고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석유업법의 규정에 따라 중지를 권고한다). ③ 그와 병행하여 휘발유판매업법에 의한 「표준적 가격」을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同法에 의한 권고를 발동한다. ④ 휘발유에 관해서만 석유업법에 의한 「표준액」의 지정을 검토한다. ⑤ 휴전기간중의 특별조치로서 元壳會社별로 말단주유소까지의 판매실적 합계를 통산성에 제출토록 한다. 이 통계는 非公表로 하지만 말하자면 「精販録」의 파악에 유효하다. ⑥ 당면한 석유산업의 코스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알맞는 수준까지 등유의 재고량을 감소시킨다—는 등이 생각된다. *〈日本化學工業日報, 1985. 9. 2자〉

□ 海外石油產業動向 □

日本, 내년부터 휘발유 수입자유화

日本은 석유제품수입을 요구하는 歐美선진국의 압력에 굴복, 내년부터 휘발유·灯油·輕油의 수입을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석유제품수입방안을 검토해온 石油審議會의 石油部會소위원회는 최근 휘발유수입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를 정부에 전의했으며, 이에 따라 通產省·資源에너지厅은 내년 봄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수입을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공급체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는 국내에 정제시설을 가진 정제업자로 한정시켰다.

石油部會소위원회는 이 중간보고서에서 소비지정제주의원칙은 견지하나, 국제협조를 위해 제품수입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휘발유 등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입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휘발유 등은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라는 점을 감안, 안정공급체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자의 조건으로서 ① 수급상황에 맞추어 수입과 국내경제를 탄력적으로 선택, 조화시킬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가진 자, ② 충분한 품질관리능력이 있는 자, ③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의 3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입업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3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정제시설을 갖고 규모도 비교적 큰 대규모 석유회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보고는 또 휘발유수입을 추진하기 위해 석유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는 灯油재고의 무량의 축소 등의 관련 조치도 취할 것을 촉구했다.